##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
[청주지방법원 2014. 9. 1. 2014고합106,142(병합)]

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이윤구, 이유선(기소 및 공판), 김인숙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청주로 외 2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7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